



제410회국회(정기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상사태에 핵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
■ 신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3960호)

2023.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박규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원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3. 08. 23.
3. 회 부 일 : 2023. 08.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하여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등 우발적 핵 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핵탄두 대량 생산을 공언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음.

이에 비상 상황에 ‘핵 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하여 국가 차원의 핵전(核戰)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2호).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물적자원의 정의에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를 의미하는 비상사태에 핵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u>비상 시</u> (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비상 시</u> (핵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포함한다. <u>이하</u> ----- ----- -----.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¹⁾.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제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함)에 핵무기 등에 의한 공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핵전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 등 비상사태의 범위는 화학무기(화학탄), 생물학무기(세균, 독소 등) 및 재래식 무기(미사일, 포탄)뿐만 아니라 핵무기(원자폭탄 등)와 그로 인한 방사능을 모두 포함하는 적대세력에 의한 전반적인 공습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법령에 따른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축대상물자에 화생방 방호·제독(制毒)·예방 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²⁾

-
-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 ①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3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1. 식품
 2. 의복류·가죽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 및 그 밖의 공산품류
 3. 석탄·석유·천연가스 및 그 밖의 연료
 4.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水處理劑)
 5. 철도차량·하역장비 및 그 밖의 수송용장비
 6. 토목건축용물자·인공구조물 및 그 부속물자
 7. 통신설비·통신용품 및 그 밖의 통신용물자
 8. 홍보용 물자
 9. 화폐 및 국채(國債)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10. 긴급복구용 장비 및 자재
 11. 전시 구호물자
 12. 화생방 방호·제독(除毒)·예방 물자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 대응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만 비상사태의 유형에서 적의 공격 수단 또는 방법 중 하나로 핵무기(원자폭탄 등)에 의한 공격만을 별도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³⁾.

문 의 처
02)6788-5349

3) 행정안전부도 같은 입장임.